

1. 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위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6개 법률 개정(2021. 4. 20. 공포, 2021.10. 21. 시행)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부담하게 될 진료비용 지원 범위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상황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신설(제19조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(제19조 1항)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범위를 설정하기 위함(제19조 2항 및 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비용 지원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
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단되어 제2조제3항의 ‘전상군경 등’과 제2조제3항의2의 ‘일부분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’ 및 제2조제4항의 ‘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’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

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3항의 ‘전상군경 등’과 제2조제3항의2의 ‘일부분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’ 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, 국가는 제9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.

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4항의 ‘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’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, 국가는 「국민건

강보험법 시행령」[별표 2]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에[별표 1의2]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.

④ 보훈병원장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, 처장은 즉시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. 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에게 진료비 지원범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⑤ 보훈병원장은 해당 지역 보훈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되면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,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별도로 정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9조(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비용 지원) 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중단되어 제2조제3항의 ‘전상군경 등’과 제2조제3항의2의 ‘일부분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’ 및 제2조제4항의 ‘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’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</u> <u>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3항의 ‘전상군경 등’과 제2조제3항의2의 ‘일부분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’ 이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, 국가는 제9조를 준용하여 진료비용을 지원한다.</u> <u>③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</u>

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일부 차질이 발생되어 제2조제4항의 ‘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’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 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 료를 받은 경우, 국가는 「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」 [별표 2]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 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에 [별표 1의2]에 따른 국가유공자 의 유족 또는 가족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 다.

④ 보훈병원장은 「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 는 경우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 고하고, 처장은 즉시 승인여부 를 통보하여야 한다. 처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 보훈병원장은 진료대상자에게 진료비 지원범 위 및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하여 야 한다.

⑤ 보훈병원장은 해당 지역 보훈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되면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고,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가 중단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별도로 정한다